

환 경 부

훈계 · 시정 요구

제 목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및 준공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삼척시, 양구군

관 련 자 양구군 ○면사무소(전 ○○○○과) 지방○○○○(전 지방○○○
○○) ○○○

내 용

지방○○○○○ ○○○은 2010. 8. 3.부터 2016. 1. 5.까지 ○○○과(현, 상
○○○○○소)에서 근무하면서 “양구군 ○○○○○○시설 ○○사업”의 준공 관
련업무 실무담당자였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삼척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및 운영 부적정

「하수도법」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
라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일괄시공이 가능토록 계
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및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
무지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운전 전체를 완료하고 정상운전에 들어
가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사용개시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시·도지사(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삼척시 ○○○○○○소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2013. 7.)시 ○○○○○○○○시설 및 ○○○○ 정비사업을 2015년까지 완료하기로 계획하고 ○○○○○○시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포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2. 1. 25.에 완료하였다.

따라서, 삼척시 ○○○○○○소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 시설을 신설하면서 하수관거 설치사업과 일괄시공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하수관거 설치인가(2012. 10. 26.) 이후 약 5개월이나 지연 발주(2013. 3. 4.)하였고, 발주 시 우선 설치되어야 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공사기간은 26개월로, 하수관거 공사기간은 36개월로 추진함으로써, 준공 후 하수가 미유입 되어 정상운영이 불가하도록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공사진행 중 사업기간 변경, 공법기자재 적기발주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하수처리시설의 정상운전을 위한 종합시운전을 하지 못하고 2015. 12. 29. 준공하였고, 준공 후 약 7개월이 지난 2016. 7. 28.에 사용개시 공고를 하였다.

<○○ ○○○○○○시설 및 ○○○○ 정비사업 추진 및 계약현황>

구 분	예산신청일	예산확정일 (가내시)	설치인가	시행결의일 (발주)	사업규모	총사업비	공사기간
처리시설	2010.3.17.	2010.10.14.	2012.7.27.	2012.10.4.	처리시설 1,600m ³ /일, 간선관거 7.51km	14,231백 만원	착공일로부터 26개월
하수관거	2012.3.13.	2012.10.11.	2012.10.26.	2013.3.4.	간선관거 5.97km	20,237백 만원	착공일로부터 36개월

구 분		계약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계약업체
			착수일	준공예정일			
				최 초	변경	증,감(△)	
처리 시설	설 치 사업	8,869	2012.12.4.	2015.1.22.	2015.12.31.	343일	(주)○○
	공 법 자 재	1,105	2015.1.28.	2015.8.25.	2016.9.30.	402일	(주)○○○○○○○○
하수관거		10,964	2013.4.22.	2016.4.5.	2016.11.25.	234일	(주)○○○○○

또한, ○○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2016. 7. 28.)이후 다음과 같이 방류수질도 초과하여 운영하였다.

<강원도○○○○○○원 수질검사 결과>

구 분		방류수질(mg/L, 개/ml)						비 고
		BOD ₅	COD _{Mn}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시료채취일	검사완료일	10	40	10	20	2	3,000	방류기준
2016.7.28.	2016.8.16.	2.7	8.4	1.4	2.773	0.193	18,000	□ : 초과항목
2016.8.10.	2016.8.29.	6.2	10.0	3.4	3.692	1.066	19,000	
2016.8.18.	2016.9.5.	2.1	10.7	1.0	1.659	0.113	불검출	
2016.8.22.	2016.9.7.	4.4	11.6	2.2	1.707	0.672	9,700	
2016.8.25.	2016.9.7.	3.5	7.3	1.4	1.442	1.510	87	
2016.8.30.	2016.9.13.	1.4	3.6	0.4	0.931	0.956	불검출	
2016.8.31.	2016.9.21.	1.4	3.6	1.0	0.980	0.476	2	
2016.9.8.	2016.9.27.	2.1	5.3	1.0	2.011	0.903	3	

2. 양구군 ○○○○○○○○○ 설치사업 준공(시운전비 정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붙임4. 시운전에 따라 종합시운전에 따른 비용은 공사준공 시 정산하여야 하며, 「양구군 ○○○○○○시설 증설공사」 지방서 제5장에서도 시운전 비용을 정산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양구군 ○○○○○○소는 2013. 2. 13.에 ○○○○○○(주)와 “○○군 ○○○○○○시설 증설공사”의 도급계약¹⁷¹⁾을 체결하였고, 2013. 6. 4.에 (주)○○ 외 1개사(주)○○○○○○○○○○건축사사무소)와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체결하여 2013. 2. 18.부터 2014. 11. 24.에 공사 및 시운전을 실시하였으며, 준공검사 시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여(4,581백만원) 준공처리 하였으나

시운전 기간 중 설계대비 낮은 농도 및 적은 하수유입으로 인하여 PAC¹⁷²⁾ 및 폴리머¹⁷³⁾의 사용량이 줄어 약품사용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다음과 같이 시운전비용 10백만원을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시운전비 정산 내역>

구 분	단위	단가	수량		계약금액(원)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증,감(△)
합 계					14,304,960	3,507,840	△ 10,797,120
PAC	kg	200	15,540	9,924	3,108,000	1,984,800	
폴리머	kg	5,100	1,728	184	8,812,800	938,400	
기술료	식		1	1	2,384,160	584,640	

주) 기술료는 제경비의 20%적용, VAT 미포함.

위와 같이 “○○군 ○○○○○○시설 증설사업” 시운전비 준공정산 부적정과 관련하여 지방○○○○ ○○○은 실무책임이 있다.

171) 계약금액 : 4,642백만원(시운전비 288백만원 포함), 계약기간 : 2013. 2. 18. ~ 2014. 11. 24.

172) PAC(Poly Aluminum Chloride) : 입자상물질의 침강속도를 높이기 위한 응집제로 주로 최종침강용으로 사용

173) 폴리머 : 입자상물질의 침강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응집제로 주로 탈수용으로 사용

조치할 사항 삼척시장, 양구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삼척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 추진 시 계획수립 단계에서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주 일정의 조정 등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에 대하여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양구군은 부당하게 지급된 시운전 비용 1,187만원을 관련규정에 따라 회수조치하고, 과다하게 대가를 수령한 시공사와 이에 대한 감리책임이 있는 책임감리회사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적의 조치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